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246

제안연월일: 2020. 12.

제 안 자: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569호)	김형동	2020. 7. 7.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0. 9. 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 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112호)	정부	2020. 7. 17.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0. 9. 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 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04771호)	안호영	2020. 10. 29.	환경소위원회 직접 회부

나.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0. 12. 1.)에 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 38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0. 12. 3.)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 재활용시장은 영세업체 비중이 높아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유가하락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전반의 판매단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성이 저하된 상태임.

폐지·플라스틱·비닐 등과 같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초 공공서비스임. 따라서 주요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을 위한 시장관리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함. 아울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한 공공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관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와 함께 보관료·운송료 등의 비용부담 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그동안 재활용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지로 등을 통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납부 대상 업체로 하여금 불편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유사 타법 사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 가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징수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 금 및 그 가산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나. 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시설 설치·운영 및 보관료·운송비의 부담·지원을 규정함(안 제34조의5).
- 다. 재활용시장의 상시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활용시장 관리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10 신설).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 중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①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제12조제4항·제1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③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 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④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 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 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 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9제1항 중 "비산(飛散)"을 "날림"으로 한다.

제30조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제34조의5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그 밖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운영할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

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해서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 보관, 관리,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에 제3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제1호의2 중 "제25조의4제5항"을 "제25조의4제7항"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및 제39조의2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5 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 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 판매대금의 용도) -----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 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6. ---- 환경부령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신 설>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 담금등의 납부) ① 폐기물부담 금, 재활용부과금 및 제12조제4 항ㆍ제19조제3항에 따른 가산 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 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 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 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 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 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 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 • 제조 신고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 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③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조 신고 등) ① ~ ④ (현 행과 같음)
-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 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 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신고 · 변경신고 수 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⑤ (생략)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 항)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 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 • 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비산(飛散) 방지 등 환경관리를 |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0조(「민법」의 준용) 조합 및 제30조(「민법」의 준용)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 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u>에서</u>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 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 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 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 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 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 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

항) ① -----날림 -----

② (현행과 같음)

용한다.

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그 밖의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 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 <u>여</u> 비축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 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 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 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 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 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신 설>

<신 설>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해서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 보관, 관리,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정한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수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 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렁으로 정한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제39조의2(벌칙)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u>제25조의4제5항</u> 을 위반하	1의2. <u>제25조의4제7항</u>	
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		
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		
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